



서대문구의회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제2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재협의**

1. 2015.4.14일자 「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」 철회 요구(요구자: 홍길식 의원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철회 요구와 관련 제21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구두 협의하고, 전체의사일정을 붙임과 같이 변경 시행하고자 합니다.

■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(의사일정)

“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,~”

○ 지방의회운영 p274 <최민수 저>

“ 의장이 전체의사일정을 운영위와 협의하여 확정하였다하더라도 추후에 사정변경에 따라 전체의사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함.(중략)

안건추가 및 삭제 등 경미한 사항이면 의장은 의사일정 작성권자로서 운영위원장과 구두협의를 한 후 변경도 가능할 것임”

■ 변경사항 : 의회운영위원회 [2015. 4. 17. 10:30] 개최 삭제

붙임 : 전체의사일정 1부. 끝.

